

제360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5월25일(금)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계속)
2.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물산업진흥법안(계속)
10.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11.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8.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청소년 노동 보호법안
- 13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 1.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 · 강병원 · 유동수 · 김철민 · 권미혁 · 전해철 · 윤후덕 · 어기구 · 김한정 · 송기현 · 이훈 · 박정 · 송옥주 · 김병욱 · 유은혜 · 조승래 · 김영호 · 김종민 · 위성곤 · 이개호 · 김병기 · 박찬대 · 김상희 · 임종성 · 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5
- 2.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정성호 · 고용진 · 김경협 · 유동수 · 서영교 · 이원욱 · 박찬대 · 김상희 · 기동민 · 김민기 · 최운열 · 박정 · 어기구 · 송옥주 · 제윤경 · 민홍철 · 김종민 · 강훈식 · 김병욱 · 소병훈 · 김철민 · 윤후덕 · 백혜련 · 진선미 · 백재현 · 양승조 · 안민석 · 김삼화 · 신창현 · 김영주 · 정재호 · 노웅래 · 유승희 · 김병기 · 이춘석 · 황희 · 안호영 · 김영호 · 박용진 · 이용득 · 문희상 · 서형수 · 임종성 · 한정애 · 윤관석 · 안규백 · 이재정 · 박남춘 · 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5
-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5
-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이원욱 · 김철민 · 이용득 · 신창현 · 기동민 · 서영교 · 추혜선 · 박정 · 유동수 · 권미혁 · 박재호 · 강창일 · 박찬대 · 천정배 · 박남춘 · 채이배 · 임종성 · 송옥주 · 안규백 · 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5
-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이원욱 · 박재호 · 한정애 · 윤종오 · 김해영 · 홍영표 · 서형수 · 송옥주 · 이용득 · 이학영 · 최인호 · 박홍근 · 박광온 · 이정미 · 홍익표 · 김현권 · 기동민 · 정춘숙 · 진선미 · 강병원 · 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5
-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김현권 · 노회찬 · 민홍철 · 송옥주 · 심상정 · 우원식 · 윤소하 · 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6
- 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문진국 · 장석춘 · 김경진 · 송희경 · 함진규 · 윤영일 · 곽상도 · 윤종필 · 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6
-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 9.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유승민 · 곽대훈 · 조원진 · 김석기 · 김규환 · 추경호 · 김정재 · 정갑윤 · 이종배 · 정태옥 · 이종명 · 홍의락 · 강석호 · 김상훈 · 이철우 · 윤재옥 · 주호영 · 이완영 · 정종섭 · 김부겸 의원 발의)(계속) 6
- 10.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추경호 · 곽상도 · 정태옥 · 조원진 · 정종섭 · 주호영 · 곽대훈 · 김상훈 · 김정재 의원 발의) 6
- 11.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6
- 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이춘석 · 신경민 · 권철승 · 김영주 · 백혜련 · 이찬열 · 정재호 · 김해영 · 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6
- 1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강병원 · 강훈식 ·

권미혁·권철승·김경진·김경협·김병관·김병기·김삼화·김성수·김정우·김종민·김한정·김해영·문진국·문희상·박경미·박선숙·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서영교·서형수·송기현·송영길·송옥주·신동근·신보라·신창현·심기준·심재권·어기구·우상호·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성엽·유승희·윤관석·이상돈·이수혁·이용득·이정미·이찬열·이철희·이춘석·임이자·이훈·장석춘·장정숙·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정식·최운열·최인호·하태경·한정애·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6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홍문종·윤종필·장석춘·문진국·함진규·원유철·한정애·안상수·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6

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박준영·하태경·신용현·김삼화·김관영·진영·최운열·김중로·이철규·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6

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정병국·오신환·유승민·박인숙·정운천·김관영·유의동·김삼화·이연주 의원 발의)(계속) 6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채이배·김수민·권은희·김동철·황주홍·하태경·신용현·송기석·이용호·최도자·김중로·주승용·정병국 의원 발의) 6

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김성원·이철규·주광덕·전희경·권석창·김정재·정유섭·이양수·홍문표 의원 발의) 6

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송희경·박성중·이종배·이종명·백승주·경대수·신상진·곽대훈·홍문표 의원 발의) 6

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홍문표·추경호·김종석·정태욱·박덕흠·이종구·이혜훈·이은재·윤영석 의원 발의) 6

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02시32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너무 밤늦은 시간에 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환경부차관님 또 고용노동부차관님, 늦은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강병원·유동수·김철민·권미혁·전해철·윤후덕·어기구·김한정·송기현·이훈·박정·송옥주·김병욱·유은혜·조승래·김영호·김종민·위성곤·이개호·김병기·박찬대·김상희·임종성·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2.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정성호·고용진·김경협·유동수·서영교·이원욱·박찬대·김상희·기동민·김민기·최운열·박정·어기구·송옥주·제윤경·민홍철·김종민·강훈식·김병욱·소병훈·김철민·윤후덕·백혜련·진선미·백재현·양승조·안민석·김삼화·신창현·김영주·정재호·노웅래·유승희·김병기·이춘석·황희·안호영·김영호·박용진·이용득·문희상·서형수·임종성·한정애·윤관석·안규백·이재정·박남춘·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원욱·김철민·이용득·신창현·기동민·서영교·추혜선·박정·유동수·권미혁·박재호·강창일·박찬대·천정배·박남춘·채이배·임종성·송옥주·안규백·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

원옥 · 박재호 · 한정애 · 윤종오 · 김해영 · 홍영표 · 서형수 · 송옥주 · 이용득 · 이학영 · 최인호 · 박홍근 · 박광운 · 이정미 · 홍익표 · 김현권 · 기동민 · 정춘숙 · 진선미 · 강병원 · 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6.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김현권 · 노회찬 · 민홍철 · 송옥주 · 심상정 · 우원식 · 윤소하 · 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7.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문진국 · 장석춘 · 김경진 · 송희경 · 함진규 · 윤영일 · 광상도 · 윤종필 · 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8.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물산업진흥법안(광상도 의원 대표발의)(광상도 · 유승민 · 광대훈 · 조원진 · 김석기 · 김규환 · 추경호 · 김정재 · 정갑윤 · 이종배 · 정태욱 · 이종명 · 홍의락 · 강석호 · 김상훈 · 이철우 · 윤재옥 · 주호영 · 이완영 · 정중섭 · 김부겸 의원 발의)(계속)

10.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 · 추경호 · 광상도 · 정태욱 · 조원진 · 정중섭 · 주호영 · 광대훈 · 김상훈 · 김정재 의원 발의)

11.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 · 이춘석 · 신경민 · 권칠승 · 김영주 · 백혜련 · 이찬열 · 정재호 · 김해영 · 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1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 · 강병원 · 강훈식 · 권미혁 · 권칠승 · 김경진 · 김경협 · 김병관 · 김병기 · 김삼화 · 김성수 · 김정우 · 김종민 · 김한정 · 김해영 · 문진국 · 문희상 · 박경미 · 박선숙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서영교 · 서형수 · 송기현 · 송영길 · 송옥주 · 신동근 · 신보라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 여기구 · 이상호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성엽 · 유승희 · 윤관석 · 이상돈 · 이수혁 · 이용득 · 이정미 · 이찬열 · 이철희 · 이춘석 · 임이자 · 이훈 · 장석춘 · 장정숙 · 전해숙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승래 · 조정식 · 최운열 · 최인호 · 하태

경 · 한정애 · 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홍문종 · 윤종필 · 장석춘 · 문진국 · 함진규 · 원유철 · 한정애 · 안상수 · 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박준영 · 하태경 · 신용현 · 김삼화 · 김관영 · 진영 · 최운열 · 김중로 · 이철규 · 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 · 정병국 · 오신환 · 유승민 · 박인숙 · 정운천 · 김관영 · 유의동 · 김삼화 · 이언주 의원 발의)(계속)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동섭 · 채이배 · 김수민 · 권은희 · 김동철 · 황주홍 · 하태경 · 신용현 · 송기석 · 이용호 · 최도자 · 김중로 · 주승용 · 정병국 의원 발의)

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김성원 · 이철규 · 주광덕 · 전희경 · 권석창 · 김정재 · 정유섭 · 이양수 · 홍문표 의원 발의)

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송희경 · 박성중 · 이종배 · 이종명 · 백승주 · 경대수 · 신상진 · 광대훈 · 홍문표 의원 발의)

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 · 홍문표 · 추경호 · 김종석 · 정태욱 · 박덕흠 · 이종구 · 이혜훈 · 이은재 · 윤영석 의원 발의)

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대리 한정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소위의 결과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먼저 환경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간사,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이자**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환경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한정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24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8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의 조정,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부장관은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이정미, 우원식,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구제급

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고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사용환경, 사용기간 및 사용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는 환경부장관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상도·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법의 제명을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진흥시설, 실증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소위 활동을 해 주신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 간사,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정애 다음은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5월 21일, 22일, 24일, 25일 네 차례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9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롭게 구성될 사회적 대화기구가 참여 주체 및 논의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 차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률의 주요 목적을 ‘산업평화 도모’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도모’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 주체 간 상호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직이라는 성격을 반영하여 개의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 대표위원을 현행 각 2인에서 각 5인으로, 공익대표위원을 2인에서 4인으로 확대

하면서 공익대표 선출 방식에서 상호 순차배제 방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다양한 분야 및 계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기존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무위원회를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산하에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상시 설치하도록 하며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사정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의무조항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위원회가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각 참여 주체가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신의칙상 당연한 의무로 보아 존치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 하태경 의원, 김삼화 의원, 신보라 의원, 김학용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각각 당해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이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임이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소위 활동을 해 주신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 및 공청회 생략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위원님, 조문별로 검토하는 축조심사를 하고 난 뒤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정미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할 때 하시면 어떨까요?

○이정미 위원 아니요, 법안 처리와 관련돼서도 제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의결을 하시겠다고 하길래 이번 물산업진흥법에 대한 환경부장관님의 생각과 공청회 생략에 대한 의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잠깐, 사실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신청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난 5월 국회를 개의하기 위한 4개 교섭단체 간의 합의사항에 보면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산업진흥법이 물관리 일원화법이라고 통칭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특히나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해서 물 민영화 그리고 특혜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19대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집권 정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이 안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환경단체들에서도 상당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환경운동을 했던 장관님으로서 물산업진흥법이 물관리 일원화인 법이며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물 민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저희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은 환경부가 2017년 9월부터 만들어서 운영했던 물관리비전포럼에서 제도분과에서 검토를 거쳤습니다. 거기에는 시민사회나 관련 분야

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셔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다 검토는 일단 거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 관련 3법에 대해서는……

○이정미 위원 그 포럼에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검토……

○이정미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아니요, 그것은 검토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포럼 회원들 내부에,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것은 검토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를 들어서 ‘물산업 기술의 실증화 시설을 실규모로 제공해서 개발된 기술의 시장진입 활성화 도모’ 이런 구절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 시장진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 민영화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이 법 자체만으로 민영화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정미 위원 모든 민영화 과정이 그렇지요. 바로 내놓고 민영화를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진입의 기회를 열어 놓고 거기에서 일정하게 재정 투자를 해 주고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민영화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이 법을 환경부가 운영하게 될 텐데요 운영하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포럼에서 이런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환경부가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그 물관리포럼……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물관리포럼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4월 초에 성명서를 내고 물산업 클러스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물산업진흥법 폐기를 주장을 했고요. 반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환경부장관님은 이 자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시

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반대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제가 그 단체 안에서 반대가 없었냐고 그랬더니 반대가 없었다고 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반대가 없었다는 뜻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반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 안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결론으로 나온 안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 제정법을 입법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 법안이 5월 달 4개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라고는 했지만 당시에 여기에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산업진흥법이라고 전혀 인지되지 못한 채 이 논의가 진행이 됐고 당연히 정의당에서는 물기본법이나 하천법, 수자원공사법이라고 이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것을 이렇게 법안소위 한 번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통과될 수는 없는 법이다, 제정법의 전례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공청회를 거쳐서 제정하는 과정들을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말씀드린 대로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 및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제15항, 제22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11항, 전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4항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이루어진 관계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 위원** 의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저희가 소위 과정에서 그 의의와 관련된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정미 위원님 의의 있었다는 것들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河泰慶 위원** 잠깐, 미세먼지법안?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닙니다.

○**河泰慶 위원** 물관리·물산업?

○**위원장대리 한정애** 지금 3항 미세먼지 저감법 그리고 제11항 대안으로 나온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제14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해당 법률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해당 법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河泰慶 위원** 의결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기록을 좀 남겨야 돼서……

○**위원장대리 한정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내용이신 거지요, 미세먼지법?

○**河泰慶 위원** 예, 미세먼지……

○**위원장대리 한정애**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저희 환노위가, 제가 좀 전에 노동소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2년 기간 동안 나름 많은 일을 했고 그 많은 일을 하게 된 동력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갈등상황을 돌파한 힘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들로 하여금 미세먼지 노출을 더 시키느냐 덜 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를 좀 더 말씀드리면 탄력적 근무제도는 노동소위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전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것인데 이게 환경소위에서 탄력적 근무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환경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소위와 노동소위를 같이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의 시너지를 낸 이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해법을 다 동의해주신 것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저희 환경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의사일정 제3항은 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박주민·우원식·이정미·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예.

○이정미 위원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의가 있기 때문에 축조심사, 저는 전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이 1조부터 4조를 비롯한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이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께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이 이의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의 이의를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을 통합한 의사일정 제1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동 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역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김동철·하태경·김삼화·신보라·김학용·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최저임금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이 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시작되는 법안소위 안에서 애초부터 이것은 저임금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수차 이야기를 해 왔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양대 노총을 기득권 집단으로 치부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 왔습니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합의가 이르지 않게 되자 합의를 위한 합의의 방식으로 새벽 1시에 30분 만에 급조돼서 만들어진 법안을 충분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그것도 법안소위 내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합의 처리라고 하는 원칙을 깨면서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원칙도 허물었고 그리고 산입범위 내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임금 외의 부분들까지 포함시키면서 실제로 여러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원칙을 환노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그런 처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계시는 환노위 위원 여러분들이 이 안을 일단 유보시켜 주시고, 어차피 지금 일단 저임금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 낸 만큼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로 이 안을 넘겨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에 대한 정부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그리고 입법 보완을 이후에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 주셔서 환노위가 기본적인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河泰慶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대리 한정애 하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위원** 저는 사실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척 다행히도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의 창의적인 대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 환노위가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 위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아주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냄으로써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왔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이라는 하지만 저는 서형수 대안으로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합의했던 내용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과속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균형된 안을 합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줄속이 아니라 우리가 2년 동안 고용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서 나온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대응적으로 수용해서 환노위가 이 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런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계속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

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소관부처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2017년 9월 범정부대책으로 수립되었으나 그간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온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대책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 미세먼지의 컨트롤타워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산업, 자동차 등 부처별로 분산된 미세먼지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는 그간 다소 협소하게 인정된 피해자의 범위를 구제계정 운용기관의 판단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제계정 재원에 예산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원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서도 최근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 투자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 물산업시장의 성장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규모와 기술면에서 영세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렇게 확보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20대 국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법률이 환노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하위법령의 제·개정은 물론 법률의 적기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정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고용노동소위에서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해 주신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4월 23일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참여주체와 논의의 의제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와 중소기업·영세사업주를 동시에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 노동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

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그리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신규 법안의 상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과 차관님, 고용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0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 병 원	김 삼 화	문 진 국	서 형 수
신 보 라	이 정 미	임 이 자	장 석 춘
하 태 경	한 정 애		

○**청가 위원(1인)**

송 옥 주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전 문 위 원	송 주 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차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은 경
정 책 기 획 관	안 병 옥
환 경 보 건 정 책 관	박 천 규
대 기 환 경 정 책 관	김 한 승
상 하 수 도 정 책 관	하 미 나
	김 종 룰
	박 용 규

고용노동부

차 관	이 성 기
기 획 조 정 실 장	박 화 진
노 동 정 책 실 장	안 경 덕
근 로 기 준 정 책 관	김 왕
최 저 임 금 위 원 회 상	김 성 호
임 위 원	

【**보고사항**】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환경	서형수	신창현	더불어	2018.5.17.
	송옥주	서형수	민주당	2018.5.24.

○의안 회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5. 이상돈·윤영일·박선숙·장정숙·김중희·조배숙·김성수·유승희·김경진·문진국·한정애·이정미·김동철 의원 발의)
5월 16일 회부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6. 강훈식·윤관석·김병기·이동섭·박홍근·백혜련·김경협·신창현·안호영·박주민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6. 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권미혁·김종대·정춘숙·서형수·이찬열·박범계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7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이찬열·황주홍·윤후덕·김삼화·조배숙·채이배·유성엽·김중로·김수민·최도자·오세정·신용현·유동수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곽대훈·윤재옥·이채익·김정재·추경호·김규환·정유섭·유민봉·최연혜·정진석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5. 17. 박인숙·경대수·김승희·김세연·김성원·이군현·정진석·박주민·유동수·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8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2018. 5. 18. 곽대훈·김상훈·권칠승·김정재·추경호·이채익·김규환·황영철·김학용·박성중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김현권·남인순·박경미·유동수·전재수·제윤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1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박광온·김혜영·김종민·권칠승·전현희·최인호·이학영·정재호·이춘석·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박광온·김혜영·김종민·권칠승·전현희·최인호·이학영·정재호·이춘석·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5. 21. 이명수·박성중·함진규·박인숙·김승희·경대수·김성찬·홍철호·김재원·홍문표 의원 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8. 5. 21. 박광온·김혜영·김종민·권칠승·전현희·최인호·이학영·정재호·이춘석·윤관석·신경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5. 16. 신창현·노웅래·김철민·권칠승·심기준·문희상·김한정·박정·윤관석·한정애·김병기 의원 발의)

5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